
2025년 인천형 고용둔화 대응 프로젝트

인천 철강업 고용 회복력 구축사업 [작업환경 안전개선] 공고(안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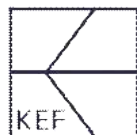
인천광역시와 (사)인천경영자총협회는 인천 철강산업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2025년도 「인천형 고용둔화 대응 프로젝트」의 일환으로 고용 회복력 구축사업(작업환경 안전개선)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, 지역 내 철강 기업 사업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※ 신청 전 반드시 상세공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2025년 7월 10일

(사)인천경영자총협회장

작업환경 안전개선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



인천경영자총협회
INCHEON ENTERPRISES FEDERATION

1 사업 개요

- (사업명) 인천 철강업 고용 회복력 구축사업(작업환경 안전개선)
- (사업목적)
 -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 확보를 위해 작업환경 개선 용품 구입비를 지원하며, 이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장기근속을 촉진함과 동시에 제조업에 대한 기피 인식 완화를 목표함
- (접수기간) 2025년 공고일로부터 ~ 예산 소진 시까지(선착순 모집)
- (지원대상) 인천광역시 소재 철강업 기업
 - ※ 붙임자료 내 인정산업분류코드 확인 必
- (지원내용) 철강업 작업환경 안전개선 물품 구입비 지원
(기업당 최대 250만원 지원 (1회) / 11개 기업 대상)
- (수행기관) 인천경영자총협회

2 지원 내용

- (지원기간) 선정일로부터 예산 소진 시(선착순 모집으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)
 - ※ 지원금 지급 기준은 ④ 지원금 지급 참고
- (지원금액) 기업당 최대 250만원 지원(1회) / 11개 기업대상
 - 작업환경 안전개선 품목 구입에 대수 제한은 없으나, 동일 사업주(사업자)당 한도 내 지원
 - 작업환경 안전개선 물품 구매 금액이 지원한도 초과 시, 최대 *250만원 까지 지원함 *부가세를 제외한 금액 지원
- (지급방법)
 - 신청(서) 접수 및 근속 확인 후 지급
 - ※ 미비서류 존재 및 기한 내 서류 미제출 시, 지원금 지급하지 않음→서류 보완 후 지급
 - 기업 명의로 된 개인계좌로 지급
 - 중앙부처 및 지자체 유사 지원사업 중복 지원 불가
 - ※ 타 사업에서 중복지원을 허용한 경우에도 본 사업은 중복 지원 불가로 유사 사업 중복지원 확인 시 전액 확급될 수 있음
 - 철강산업 기업에 한하여 지원(지원대상, “붙임(p.17)” 참조)
 - 2025년 12월 기준으로 지급 종료

3 신청 자격

□ (기업요건)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기업(본사, 공장, 지사 :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지 기준)으로, 철강업 중 아래 요건에 부합하는 기업

[대상업종]

- ① 철강업종 산업분류코드 해당 사업("붙임" 참조)
- ② 우선지원 대상기업(상시근로자 500인 이하)
- ③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따른 특별법」 제25조에 따른 중견기업도 지원 가능 ※ 중견기업 확인서 제출

□ (지원수준) 기업당 최대 250만원 지원(1회)

- 작업환경 안전개선 품목(온열질환 및 안전사고 예방용품, 근로자 보건·위생 용품) 구입에 대수 제한은 없으나, 동일 사업주(사업자)당 한도 내 1회 지원
- 작업환경 안전개선 물품 구매 금액이 지원한도 초과 시, 최대 *250만원 까지 지원함 *부가세를 제외한 금액 지원

□ (지원품목)

- 이동식 에어컨, 냉·난방기, 공기순환장치 및 공기청정기
- 화재·안전용품 세트, 산업용 화재 전용 소화기, 근로자 안전용품
- 신발 살균기, 산업용 세탁기, 발판 소독기
- 그 외 기타 필요물품 구매 시 사전 보고를 요청드리며, 보고 내용에 대한 검토 후 지원가능 여부 회신예정
- 지원품목(안)

온열질환 예방용품	안전사고 예방용품	근로자 보건/위생용품
이동식 에어컨, 냉·난방기, 공기순환장치	화재안전사고 구호 키트, 산업용 화재 소화기, 근로자 안전용품	신발 살균기, 산업용 세탁기, 발판 소독기
<p>예시1)</p> 	<p>예시2)</p> 	<p>예시3)</p> 
▲ 이동식 에어컨	▲ 화재/안전용품 세트	▲ 신발 살균기

4 지원금 지급

□ (지원요건)

- 2025. 5. 1. 이후로 구매한 제품에 한해서 지원
- 2025. 5. 1. ~ 공고게시 전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는 구매 내역 입증 가능한 증빙자료 필수 첨부 *부가세 제외한 금액 지원*
- 구매기기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로서 주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함(생산현장 우선 설치 등)
- 지원품목 안에 해당하며 작업환경 안전개선을 위해 적절한 품목인지에 대해 기업 선정심사 시, 지원 타당성 검토 후 지원 여부 최종 확정
- 성능, 사양* 등을 검토하여 자체적으로 사업장에 적합한 제품 및 판매업체 선정
 - * 온열질환예방용품 - 냉방능력, 소비전력, 배수방법, 열풍 배기방법 등
 - ** 화재·안전사고예방용품 - 방사시간·거리, 비상구 및 적정 설치공간 등
 - ***근로자 보건/위생용품 - 보호기능, 위생효과, 국가·품질인증, 내구성, 소비기간 등
- 제품 및 구매업체 선정 시 **유의사항**
 - * 사업장-구매업체 간의 거래과정(견적, 계약, 물품검수, 구매대금 결제, A/S 기간·절차협의 등)과 결과에 대해 사업장에서 직접 관련 서류 및 물품 등을 확인하여야 함
 - **사업장-판매업체 간의 거래과정과 결과는 수행기관에서 책임지지 않음

□ (지원금 지급일)

- 근로자 선정 후, 「지원금 신청 시 서류(5종)」 제출 확인 시 지원금 지급
 - ※ 수행기관 내부 사정 등으로 지급 일정에 변동이 있을 수 있음
 - ※ 지원금 신청 시 서류(5종) 제출이 완료되어야 해당 지급일에 지급됨
 - ※ 미비서류 존재 및 기한 내 서류 미제출 시, 지원금 지급하지 않음→서류 보완 후 지급

5 신청 방법

□ (모집기간) 공고일로부터 ~ 예산 소진 시까지(선착순 모집)

※ 선착순 모집으로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

□ (신청방법)

- 비즈오케이 홈페이지 : <https://bizok.incheon.go.kr>

비즈오케이
접속 및 로그인

온라인
기업지원사업 신청

참여해당 사업 클릭 및
기업지원사업 신청

신청서 및
구비서류 제출

□ (선정방식 및 기준)

- 신청내역 및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순서에 따라 선정
- 기한 내에 서류 미제출 및 제출서류 미비 시 선정 제외
- 기타 지원 제외 대상 확인 시 선정 제외

□ (신청 및 지급절차)

단계	수행방법
모집 공고 ↓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참여대상 모집 - 인천경영자총협회 홈페이지 (https://www.inef.or.kr) - 비즈오케이 홈페이지 (https://bizok.incheon.go.kr)
사업 신청 ↓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(참여기업) 참여신청 및 필요서류 제출 · (대상자) 참여신청 및 필요서류 제출 * [기업-사업 참여 신청 시] 필요서류(7~8종)
서류 검토 및 선정 ↓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신청기업 지원 품목 적정 여부 확인 · 기업 선정 및 통보
지원금 지급 신청 ↓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(선정기업) 지원금 신청서 제출 * [지원금 신청 시] 필요서류(5종)
지원금 요건 검토 및 지급 ↓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(수행기관) 지원금 요건 검토 및 지급
사후 관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(수행기관) 허위 및 부정·부당 수급 확인 * 적발 시 지원금 환수

6 제출서류 안내

순 번	목 록	구분	부수
1	· 사업 참여 신청 시[기업] (7종 필수 제출)		
1-①	(서식1) 작업환경 안전개선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	필수	1부
1-②	(서식2) 작업환경 안전개선 지원 품목 도입 계획서(설치현장 사진 등)	필수	1부
1-③	(서식3)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서	필수	1부
1-④	사업자등록증	필수	1부
1-⑤	도입계획 제품 견적서 *네이버 및 쿠팡 등 구매희망 물품 캡처본 증빙 불가	필수	1부
1-⑥	상품 품목 - 제품명, 외관사진, 사양, 규격 *자유양식	필수	1부

1-⑦	공장등록증명서 * 철강업 확인 시 필요	필수	1부
1-⑧	중견기업증명서 ※ 해당기업만 제출		
2	· 지원금 신청 시(5종 필수 제출)		
2-①	(서식4) 작업환경 안전개선 지원 사업 지원금 지급 신청서	필수	1부
2-②	(서식5)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사업주 확인서	필수	1부
2-③	기업 명의 통장 사본	필수	1부
2-④	실거래 입증서류 : 거래내역 및 입금 증빙서류 *세부사항 9p 기준 참조 <실거래 입증 서류>내용 확인	필수	각 1부
2-⑤	(서식6) 지원품목 설치 증빙자료 *세부사항 9p 기준 및 서식6 참조	필수	1부
2-⑥	(서식6-1) '25. 5. 1 ~ 공고게시 전 구입물품 지원품목 설치 증빙자료 *세부사항 9p 기준 및 서식6-1 참조	해당시	1부

<실거래 입증서류 기준>

1. 거래내역 증빙서류

- ① 오프라인 구매시 : 구매계약서, 거래내역서 사본 중 1부
- ② 온라인 구매시 : 구매내역(*포함내역 : 온라인 쇼핑몰 구매페이지, 모델명, 수량, 금액, 결제방법)

2. 입금 증빙서류

- ① 오프라인 구매시 : 이체확인증, 전자세금계산서
* 이체확인증에 출금계좌번호+은행명+예금주명(사업장(주)명), 입금계좌번호+은행명+예금주명(사업장(주)명)+지급금액 등 포함

- ② 온라인 구매시 : 아래 1번 또는 2번 서류 제출

1) 무통장입금 : 이체확인증, 판매업체 전자세금계산서(또는 사업장용 현금영수증(국세청 홈택스))

- * 이체확인증에 출금계좌번호+은행명+예금주명(사업장(주)명), 입금계좌번호+은행명+예금주명(사업장(주)명)+지급금액 등 포함

2) 카드결제 : 신용카드매출전표, 신용카드복사본

- * 사용가능카드 : 법인카드(법인) 또는 국세청 등록된 사업용 신용카드(개인사업자)
- ** 신용카드매출전표 : 공급자와 지원품목 판매업체의 정보가 일치하여야 함
- *** 신용카드복사본 : 법인명 또는 대표자명이 명백하게 나타나고 카드번호는 일부 숨김

<지원품목 설치 증빙자료 기준> : 【서식6】에 첨부하여 제출

- 1. 구매한 신규기기의 모델명, 제조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명판 사진
- 2. 해당 사업장에 실제 기기가 설치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한 전경 사진

<지원품목 설치 증빙자료 기준> : 【서식6-1】에 첨부하여 제출

- 1. '25. 5. 1 ~공고 게시 전 구입한 물품 지원 신청 시에 한하여 6-1에 첨부하여 제출
- 2. 구매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및 구매한 기기의 모델명, 제조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명판 사진
- 3. 해당 사업장에 실제 기기가 설치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한 전경 사진

7 기타사항

- (예산범위 내 지급) 지원금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므로, 예산 소진시 지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
- (기한 내 서류제출) 지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기한 내 미신청 또는 첨부서류 미제출 시 수행기관에서 서류에 대해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, 기한 내 보안서류가 미비할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음
- (지원금 환수) 신청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기타 부정·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, 지원금을 반납 및 환수되며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

※ 지원금 지급 전·후 적정성 여부 증빙 자료로 확인 불가시 현장 방문 확인 시행

부정수급 주요사례

- 해당 사업장에 설치하지 않는 경우
- 설치 후, 사업장 외 장소로 이전 설치하는 경우
- 지원금 편취를 목적으로 중고 거래 등을 이용해 재판매하는 경우 등

부정청구 등의 조치

- 조치대상 : '공공재정환수법' 제2조제6항에 의한 '부정청구 등'
- 조치사항 : 지원예정인 지원금의 지급 중단, 부정이익의 환수, 제재부가금의 부과·징수 및 후속 지원사업의 참여 제한 등 가능

부정청구 유형	부정이익	제재부가금
자격이 없는데도 지원금 청구	지급된 지원금 전체	부정이익 x 500%
지원금 과다 청구	과다 지급된 지원금	부정이익 x 300%
지원금 오지급	잘못 지급된 지원금	-

※ 공공재정환수법 제7조, 제8조,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, 제5조 준용

※ 명단공표 : '공공재정환수법' 제16조에 의거,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부정이익 가액이 3천만원 이상이면, 심의를 거쳐 부정 수익자 명단 공표 가능

8 문의처

기관명	전화번호	팩스번호	이메일
인천경영자총협회 사업추진팀	032-428-8047	032-429-7111	inef118@inef.or.kr

※ 별첨 : 철강업 범위 및 인정분류 코드 1. 끝.

[서식2] 계획서

작업환경 안전개선 지원 품목 도입 계획서

순번	설치장소	설치 전 전경
순번	설치장소	설치 전 전경
순번	설치장소	설치 전 전경

※ 순번은 【서식 1】 내역의 순번 기재

※ 전경 사진은 기기의 설치예정 장소 확인이 가능하도록 촬영

[서식3] 동의서 - 기업용

기업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서[기업]

1. 기업정보의 수집 · 이용

목적	인천형 고용둔화 대응 프로젝트-철강업 고용 회복력 구축사업(작업환경 안전개선) 참여
수집 항목	인천형 고용둔화 대응 프로젝트-철강업 고용 회복력 구축사업(작업환경 안전개선)에 필요한 기업정보 - 회사명, 대표자명, 사업자등록번호, 법인등록번호, 주소, 근로자수, 업종, 담당자 연락처 등
보유이용 기간	인천형 고용둔화 대응 프로젝트-철강업 고용 회복력 구축사업(작업환경 안전개선) 운영 기간 및 종료 이후 사업 문서 보존 기간 동안 보유 및 이용
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	(사)인천경영자총협회는 보다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기업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, 기업인정보는 인천시(군·구 포함), (사)인천경영자총협회의 업무공유를 위한 자료 제공 시 활용되는 정보로,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수집하지 않으며, 미동의 시 해당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.
기업정보의 수집·이용에 동의하십니까? 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함 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하지 않음	

2. 고유식별정보 수집·이용

목적	인천형 고용둔화 대응 프로젝트-철강업 고용 회복력 구축사업(작업환경 안전개선) 참여
수집 항목	고유식별정보(사업자등록번호, 법인등록번호)
보유이용 기간	인천형 고용둔화 대응 프로젝트-철강업 고용 회복력 구축사업(작업환경 안전개선) 운영 기간 및 종료 이후 사업 문서 보존 기간 동안 보유 및 이용
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	(사)인천경영자총협회는 보다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기업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, 기업인정보는 인천시(군·구 포함), (사)인천경영자총협회의 업무공유를 위한 자료 제공 시 활용되는 정보로,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수집하지 않으며, 미동의 시 해당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.
고유식별정보의 수집·이용에 동의하십니까? 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함 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하지 않음	

3. 기업정보의 제3자 제공

목적	인천형 고용둔화 대응 프로젝트-철강업 고용 회복력 구축사업(작업환경 안전개선) 선정 참여자 지원금 지급 및 관리 사후 관리 등
제공 기관	고용노동부, 인천광역시, 한국고용정보원, 인천상공회의소 등 업무 관련 기관
제공 항목	인천형 고용둔화 대응 프로젝트-철강업 고용 회복력 구축사업(작업환경 안전개선)에 필요한 기업정보 - 회사명, 대표자명, 사업자등록번호, 법인등록번호, 주소, 근로자수, 업종, 담당자 연락처 등
보유이용 기간	인천형 고용둔화 대응 프로젝트-철강업 고용 회복력 구축사업(작업환경 안전개선) 운영 기간 및 종료 이후 사업 문서 보존 기간 동안 보유 및 이용
정보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	(사)인천경영자총협회는 보다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기업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, 기업인정보는 인천시(군·구 포함), (사)인천경영자총협회의 업무공유를 위한 자료 제공 시 활용되는 정보로,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수집하지 않으며, 미동의 시 해당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.
기업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? 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함 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하지 않음	

당사는 「인천 철강업 고용 회복력 구축사업」 참여를 위하여 위와 같이 기업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합니다.

2025년 월 일

회사명

대표자

(서명 또는 인)

(사)인천경영자총협회 귀하

[서식5]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사업주 확인서

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사업주 확인서

본 확인서는 인천광역시에서 시행하는 보조금 지급사업과 관련하여,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업주가 판매업체로부터 사업주 부담금 및 부가세 일부(또는 전부)를 대납하게 하거나 되돌려 받는 등 부정수급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확인하거나 추후에도 하지 않겠음을 확인하는 절차이며, 만약 부정수급 행위 등이 발생할 경우 수사기관 통보, 보조금 환수(제재부가금 포함), 사업참여 제한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것을 사업주가 직접 서약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직업환경 안전개선 지원 사업의 보조금을 지급 받음에 있어 판매업체로부터 사업주 부담금 및 부가가치세 일부(또는 전부)를 현금 또는 계좌송금 등의 방법으로 돌려받거나 대납하게 하는 부정수급 행위를 하지 않겠음을 서약하며, 만약 부정수급 행위 등이 발생할 경우 수사기관 통보, 보조금 환수(제재부가금 포함), 사업참여제한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겠음을 확인합니다.

※ 직업환경 안전개선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(또는 보조금을 지급 받은 사업주)는 투자금액 중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사업주 부담금과 부가가치세를 반드시 직접 납부하여야함. 만약 이를 판매업체 등을 통해 되돌려 받거나 대납하게 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.

*** 관련법령**

[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]

제40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- ①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

[형법]

제347조(사기)

-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② 전 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,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 항의 형과 같다.

상기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사업장명		사업주 성명	(서명 또는 인)
------	--	--------	-----------

[서식 6] 지원품목 설치 증빙자료

지원품목 설치 증빙 자료

- 순번 :
 설치일자/장소 :

설치 전 전경	설치 후 전경	기기 명판(모델명 및 생산연월)

- 순번 :
 설치일자/장소 :

설치 전 전경	설치 후 전경	기기 명판(모델명 및 생산연월)

- 순번 :
 설치일자/장소 :

설치 전 전경	설치 후 전경	기기 명판(모델명 및 생산연월)

- ※ 순번은 **【서식 4】** 내역의 순번 기재
 ※ 전경 및 명판 사진은 기기의 설치 장소 확인 및 제원사항 식별이 가능하도록 촬영
 ※ 설치 기기 각각에 해당하는 사진 첨부

[서식6-1] 지원품목 구매 증빙자료

지원품목 구매 및 설치 증빙 자료

- 순번 :
 구매일자 / 설치장소 :

구매 영수증 및 내역서(견적서)	설치 후 전경	기기 명판(모델명 및 생산연월)

- 순번 :
 설치일자/장소 :

구매 영수증 및 내역서(견적서)	설치 후 전경	기기 명판(모델명 및 생산연월)

- 순번 :
 설치일자/장소 :

구매 영수증 및 내역서(견적서)	설치 후 전경	기기 명판(모델명 및 생산연월)

- ※ 순번은 **【서식 4】** 내역의 순번 기재
- ※ 전경 및 명판 사진은 기기의 설치 장소 확인 및 제원사항 식별이 가능하도록 촬영
- ※ 설치 기기 각각에 해당하는 사진 첨부

[붙임]

2025 철강업 인정분류 코드

철강업(C24)의 범위

구 분	분류번호	업종명 또는 품목명
철강업	241	1차 철강 제조업
	24119	기타 제철 및 제강업
	2412	철강 압연,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
	24121	열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
	24122	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
	24123	철강선 제조업
	2413	철강관 제조업
	24131	주철관 제조업
	24132	강관 제조업
	24133	강관 가공품 및 관 연결구류 제조업
	2419	기타 1차 철강 제조업
	24191	도금, 착색 및 기타 표면 처리 강재 제조업
	24199	그 외 기타 1차 철강업

※ **참고사항**

· 분류번호, 업종명 및 품목명은 「통계법」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.